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외 지방이전 가능 사유 추가》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45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이 광 회 의 원 대 표 발 의 (제 2217045 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공공기관의 개별이전(혁신도시 외 지방이전) 가능 사유 추가 (안 제29조제1항제2호 신설)	2

I.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제221704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광희의원 등 10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5.

다. 회 부 일 : 2026. 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공공기관의 개별이전(혁신도시 외 지방이전) 가능 사유 추가 (안 제29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u>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 -----<u>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u>1.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u> <u>2.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¹⁾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이전, 즉 개별이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조²⁾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25조³⁾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법 제29조제1항4)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전공공기관 150개 중 109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고, 20개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으며, 21개 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였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구분		이전 완료기관	이전 완료 시기
혁신 도시 (109개)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 기관	2012. 12. ~ 2017. 12.
	대구	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	2012. 12. ~ 2015. 10.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2013. 03. ~ 2019. 01.
	울산	근로복지공단 등 9개 기관	2013. 01. ~ 2019. 02.
	강원	도로교통공단 등 11개 기관	2013. 11. ~ 2017. 0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 기관	2013. 12. ~ 2019. 12.
	전북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2013. 08. ~ 2017. 09.
	경북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2013. 04. ~ 2016. 03.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	2013. 01. ~ 2017. 12.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	2012. 12. ~ 2015. 10.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등 20개 기관	2013. 12. ~ 2017. 01.
개별 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1개 기관	2008. 02. ~ 2018. 07.

※ 자료: 국토교통부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개별이전(21개 기관) 사례 】

이전 완료기관

관세인재개발원('08.2, 천안), 경찰인재개발원('09.11, 아산), 국립특수교육원('10.11, 아산), 한국보건복지인재원('10.11,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11,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0.12, 오송), 질병관리청('10.12, 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11.3, 경주), 경찰수사연수원('13.7, 아산), 산림항공본부('13.11, 원주), 해양경찰교육원('13.11, 여수), 중앙119구조본부('14.11, 대구), 한국중부발전(주)('15.1, 보령), 한국서부발전(주)('15.8, 태안), 한국장학재단('15.11,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주)('16.3, 경주), 경찰대학('16.4, 아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8, 익산), 국방대학교('17.8, 논산), 한국국제교류재단('18.7, 제주)

주) 개별이전 후 해산한 1개 기관(재외동포재단) 제외

※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⁵⁾.

5) 참고로, 개정안은 “지역 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달리 “인구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구소멸을 사용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역재건”이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물리적 피해 복구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복원 및 발전 과정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

다만, 현행법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⁶⁾에서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입지 결정 시 혁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일부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는데,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경우 지역발전 거점의 조성 및 확산이라는 목표의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 변경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서 2026년에 연구·공론화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에 지방 이전을 실시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법률

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생략)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수 회부되어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 변경 관련 법률안 현황 】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지역 등으로 이전 허용 특례	제2200143호 ('24.6.5.)	행정안전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제2200145호 ('24.6.5.)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제2200152호 ('24.6.5.)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비수도권) 이전	제2201379호 ('24.7.4.)	국토교통위원회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 원칙 우선	제2201808호 ('24.7.16.)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도 가능	제2201809호 ('24.7.16.)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 간 균형 강화	제2204084호 ('24.9.19.)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도 가능	제2213881호 ('25.11.4.)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제2213882호 ('25.11.4.)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	개별이전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2217045호 ('26.2.2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이전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전효과를 감안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이전 원칙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개별이전 사유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

구분	주요 의견
전라남도 나주시 (반대)	◦ 「혁신도시법」의 목적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므로 개별이전은 지극히 한정적이어야 함 -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과열시킬 우려
전라북도 완주군 (반대)	◦ 혁신도시 신규 조성 시 막대한 시간 및 비용 소모되므로, 예외사유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 - 아울러, 기존에 예외로 개별이전을 허용했던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할 필요 있음

문 의 처

02)6788-5578